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군보건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, 군 감염병의심자,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00호, 2025. 3. 18. 공포, 9. 19. 시행)됨에 따라,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집·관리·보유·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‘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등의 진료 정보’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 포함될 사항(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의3제1항)

1)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

내용에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·군무원의 진료 정보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함.

- 2) 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·군무원의 인적 사항 및 진료기록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.

나.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 및 연계 시스템의 범위(안 제7조의5 신설)

- 1)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수집·관리·보유·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군인 및 군무원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, 예방접종을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등의 정보 및 군보건의료인 등 군보건의료자원의 현황 등으로 정함.
- 2)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국방의료정보시스템 및 군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시스템 등으로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8. ~ 8. 18., 8. 19. ~ 8. 29.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

제7조의3제1항제1호 중 “감염병 환자”를 “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감염병 환자”를 “군감염병환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감염병 환자”를 “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”로 한다.

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5(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)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

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

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4제2항

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

2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

3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

4.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

가. 군보건의료인

나. 방역,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

다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

라.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·장비 및 물품

마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

5.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
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,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.

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(이하 “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입력하거나 이를

통해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1.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
 2. 「군인사법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
 3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2.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감염병의 실태조사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군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6조(감염병의 실태조사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3(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)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(이하 “역학조사”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</u> 2. <u>감염병 환자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</u> 3. (생략) 4. <u>감염병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</u> 5. (생략)	제7조의3(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 의심자</u> ----- 2. <u>군감염병환자등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 의심자</u> ----- -- 5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5(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)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

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

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

2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

조사의 결과

3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

조사의 결과

4.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

원 현황에 관한 자료

가. 군보건의료인

나. 방역, 역학조사 또는 예방

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

인등

다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

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

라.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

하는 「약사법」 제2조제4

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

시설·장비 및 물품

마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
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
따른 국방·군사시설 중

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

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

리·치료 업무에 활용할

수 있는 시설

5.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·군

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

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

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

고시하는 자료

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,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.

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(이하 “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1.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 의료정보시스템

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2. 「군인사법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

3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
2.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

	<u>에 관한 사무</u>
--	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감염병대응팀	
연 락 처	(02) 748 - 6784